의안번호	2213224
의 뢰 인	박성민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계번호	25F530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– 공제대상: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※ 국가전략기술사업: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 – 전략산업제품 요건: ①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②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재화 – 공제율: 제품 생산비용의 30% 이내에서 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–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 ·소득세의 30% – 적용기한: 2035.12.31.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0조의35 신설)

○ 개정안은 현행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(이하 '국가전략기술사업')에서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일정 요건에 맞게 생산한 경우,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
- 공제대상: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국가전략기술 활용 재화의 요건:
  ①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
  ②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재화
- 공제율: 제품 생산비용의 30% 이내에서 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
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30%
- 적용기한: 2035.12.31.
  ※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, 10년간 이월공제 허용

❑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에 대한 법인세액 및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제품의 품목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○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중 공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, 생산비용의 산정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
-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는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청정수소 관련 제품, 미래형 이동·운송수단, 바이오의약품 등이 있으나, 세부적으로 특정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○ 또한,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의 생산여부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세액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